

취업애로청년층 지원대상 및 확인서류

지원대상자	확인(제출)서류	발급기관
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	·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	주민센터
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	· 차상위계층 확인서	주민센터
③ 차차 상위계층 가구구성원 * 가구단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%이하	- 세대별 주민등록표(등본) 또는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- 신청인 가구구성원들의 건강(의료)보험증 급여대상자 부분 사본 -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	주민센터
④ 국가 유공자 가구구성원	·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(본인명의로 발급)	지방보훈청
⑤ 장애인복지법으로 적용받는 장애인	· 장애인복지카드	주민센터
⑥ 여성가장 * 배우자가 없는(사별 또는 이혼) 여성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자 또는 미혼여성으로서 동거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자	· 세대별 주민등록표(등본) * 동거 가족의 근로능력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	주민센터 해당기관
⑦ 다문화가족 자녀 *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정한 다문화 가족의 자녀	· 세대별 주민등록표(등본) · 기본증명서(국적취득사실 기재)	주민센터

<참고> 차차 상위계층 가구단위별 소득인정액(기준 중위소득 60%)

구 분	1인 가구	2인 가구	3인 가구	4인 가구	5인 가구	6인 가구	7인 가구
2018년 기준 중위소득	1,672,105	2,847,097	3,683,150	4,519,202	5,355,254	6,191,307	7,027,359
기준 중위소득 60%	1,003,263	1,708,258	2,209,890	2,711,521	3,213,152	3,714,784	4,216,415
건강보험료	62,603	106,595	137,897	169,198	200,500	231,802	263,104

* 8인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: 1인 증가시마다 836,052원씩 증가(8인가구: 7,863,411원)

* 관련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139호 “2018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·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”